충남 인권심포지움 토론문

2014. 12. 16

진경아(복지세상을열어가는시민모임)

충남도의 경우 2012년 5월 도의원발의로 인권조례 제정, 이후 11월부터 도민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모임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도민인권증진위원회 구성 및 활동시작. 인권기본계획 수립.
그 과정을 통해서 인권위원회 위원과 참여하는 공무원 등 모두가 인권관련 서로의 이해와 눈높이를 맞추는 상호학습의 장으로써 기능.

서울인권위 문경란위원장님 발표에 의하면,
충남의 경우 규범은 인권조례와 인권선언, 제도로는 인권위원회, 정책은 인권기본계획 등으로 구성되어 비교적 구성요소가 잘 갖춰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서울의 경우 인권팀 구성→조례제정→인권담당관→인권위구성→인권보호관→기본계획수립 등의 과정,

수원시의 경우도 인권담당부서(팀) 설치→조례제정→인권위구성→교육→인권실태조사→인권기본계획 예정(2015)→인권센터개소(15. 2. 예정)

상대적으로 충남도의 경우 향후 인권기본계획을 포함한 인권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조직과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이에 대한 구성과 규모, 역할 등도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 따라서 이후 실질적인 인권내실화와 정착을 위한 추진체계와 역할에 관한 논의와 방침 결정돼야함.

광역도 단위 인권관련 역할에 대한 고민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위탁사무와 관련된 사안을 제외한 내용은 자치구에 일임하는 것으로 운영. 충남도의 경우 이후 인권침해나 진정 등과 관련한 사안 발생시 충남도와 시군과의 역할에 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충남도 15개 시군 중 부여, 천안, 서산 등 3개 지역이 인권조례 제정. 도 단위 역할 중 기초 지자체 지원과 협력 등 도민인권증진을 위한 역할과 지원체계에 대한 고민

과 과제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물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조례제정과 추진을 위한 촉진자 역할을 도가 담당해야 할 것임. 특히 기초 지자체에서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될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지원, 연계 방안 등이 마련되고, 인권증진을 위한 가이드 등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번에 수립된 5년 단위 기본계획에 대해 이후 실행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정 등의 과정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한 그림이 없는 상황.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차별 시행계획이나 모니터링 등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후속과정 마련 필요.

인권정책의 가치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책무성을 확대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노력과 과제 발굴 필요. 서울시의 경우 돌봄노동자나 다산콜센터 등을 통해 행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도함. 충남도도 이와 같이 행정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인권정책을 실천하는 노력과 의지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